

2025 공존과 성장, **희망의경남!**

2026년 도 자체 보조사업 지침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경 상 남 도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사업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의 가족기능 유지와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제7조

□ 2026년 사업계획

- 사업비 : 4,329백만원 (도비 1,299, 시군비 3,030)
- 사업주체 : 18개 시장·군수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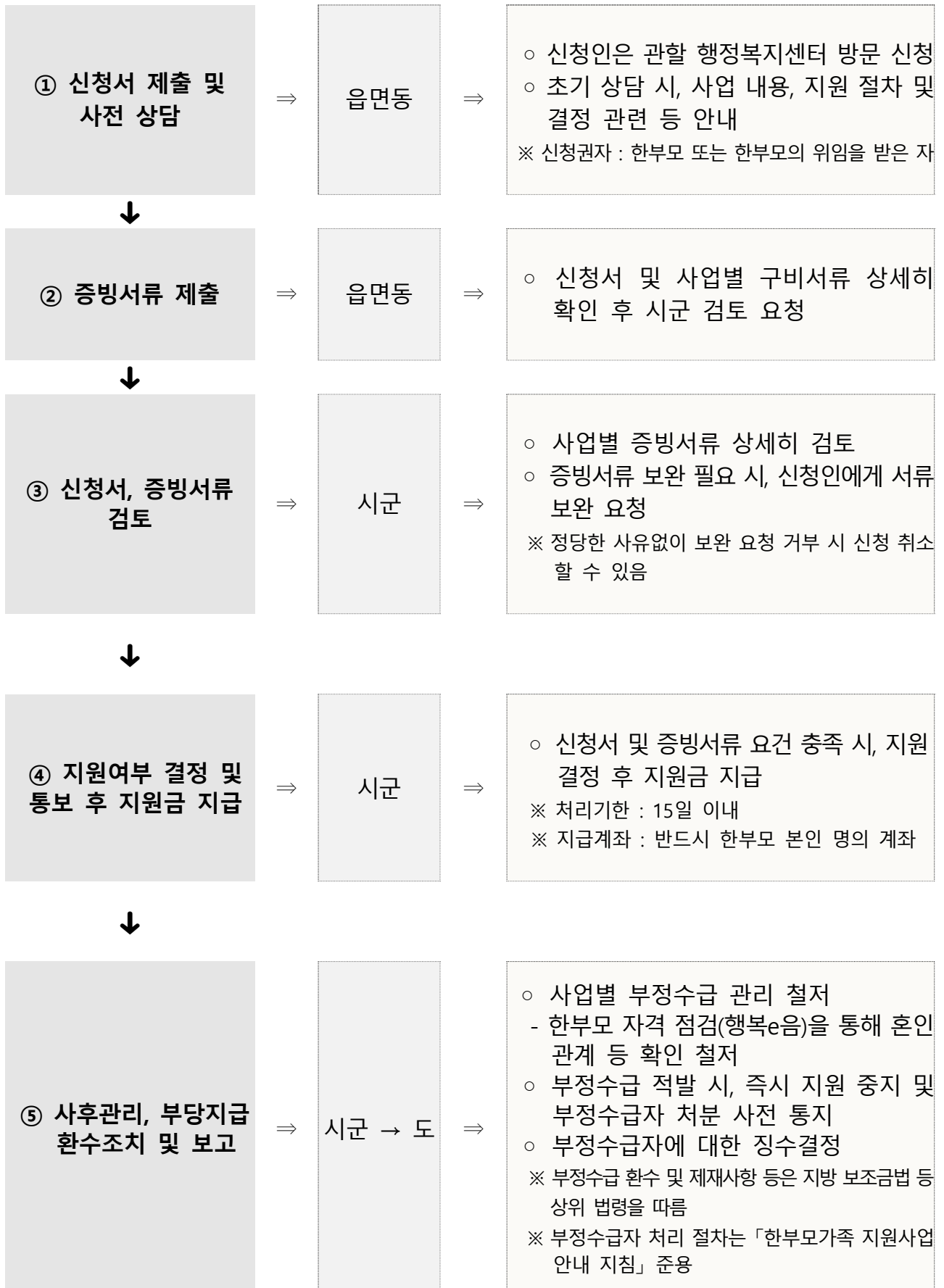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① 생활자립금	자립의지가 있는 한부모가족	300만원 이내/세대	사업 간 예산전용 가능
② 난방연료비	한부모가족	연 40만원 이내/세대	
③ 건강관리비	질환을 가진 한부모가족	연 20만원 이내/세대	
④ 방과후자녀학습비	한부모 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이내/1인	

<참고> 2026년 개편 주요사항

- (지원 항목) 문화비 폐지 *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항목	종 전	개 정
생활자립금	도내 거주 2년 이상 연 300만원 지원	도내 거주 2년 이상 연 300만원 지원
난방연료비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 제외)	연 40만원 (에너지바우처 수급권자 제외)
건강관리비	연 20만원	연 20만원
방과후자녀학습비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중·고등학생 자녀 연 60만원
문화비	연 13만원	폐지 (문화누리카드 국비 지원사업과 중복)

II. 업무 처리 체계



Ⅲ. 세부 사업내용

1 생활자립금 지원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도내 거주 2년 이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신청자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으로서 건전한 생활의식으로 자립의욕과 능력이 높으며 생활자립금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조성과 생활안정이 가능한 세대

지원 제외 대상

- ▶ 최근 5년 이내 지원 받은 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300만원 이내

- 유통판매업, 프랜차이즈, 외식업, 축산업, 서비스업 등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 제외 업종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 투기성 업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지원항목 : 창업(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신고)과 관련한 3개월 이내 창업 비용(인테리어 비용, 집기 구입비, 시설장비 설치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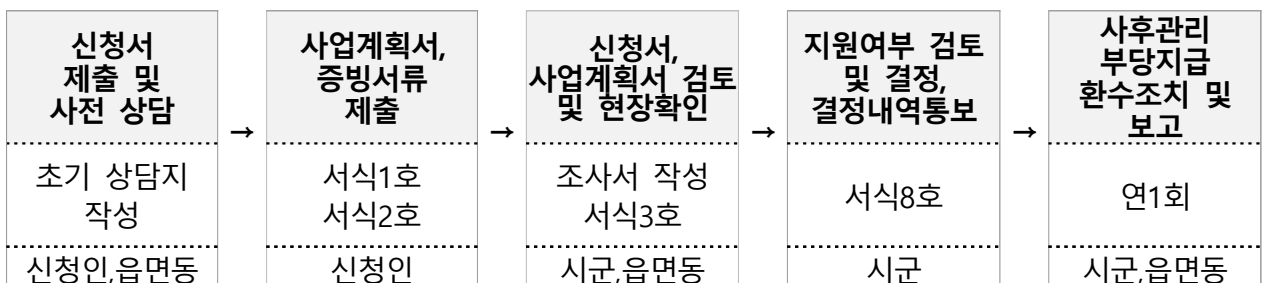
※ 임차보증금, 인건비 지원 불가

○ 신청기한 : 창업 후 6개월 이내

○ 환수대상(전액)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 1년 이내 폐업하는 경우(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사유는 제외) 등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될 때

(2) 지원절차 및 방법



○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허가증 등
-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 관련 자격증(자격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 한함)
-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등) 및 거래명세서(견적서, 청구서 등)
※ 간이영수증 : 인정 불가. 다만 인테리어 공사 등 인건비 지출시 이체 내역서, 간이영수증, 청구서 등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 지급 가능
- 기타 : 창업 현장 사진, 통장사본 등 사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원방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방문 확인 후 지원 여부 결정
※ 현장 점검 시, 사업장 주거 등 다른 용도 사용 여부 확인 철저
- 읍면동 담당자의 조사서 내용이 미비할 경우 시군담당자 재조사 의무
- 생활자립금 지원 후 1년 동안 반기별 사후 점검 안내
※ 다른 용도로 지원금 사용 적발 시 즉시 환수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안내
- 사전 점검 결과 및 사후 관리 보고 의무 (당해연도 공문 제출)
- 지원 결정 후 결과 통보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활용 가능)

○ 사후관리

- 지원 후 1년동안 반기별(2회) 사업장 점검 및 사후관리 보고(시군 → 도)

○ 기 타

- 생활자립금 지원 요건에 충족하지 않아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자에게 융자한도가 큰 복지자금(미소금융 등) 대여로 유도하는 등 타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안내

참 고 사 항

• 미소금융(서민금융진흥원)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창업예정자 포함) 및 취약계층

(지원내용)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 운영자금 및 취약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연 2~4.5%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신청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2 난방연료비 지원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가족 세대

지원 제외 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 1),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사업 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40만원 이내 난방연료비

- 지급시기 : 연 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상반기(1월말), 하반기(10월말) 지급 원칙

※ 집중 난방기 1,2,11,12월 각 75천원, 3월 10월 각 50천원 월별 지급 가능

- ▶ 신규책정 등으로 추가지급 필요 시 12월말, 3월말 등 지급 가능

- ▶ 지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기준

- ▶ 상반기 : 1월 지급결정일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 완료 세대

- ▶ 하반기 : 10월 지급결정일까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 완료 세대

- ▶ 난방비 지원 이후 신규 책정자는 다음번 지급시기에 소급지원

(예시)

한부모가족 신청일	지급시기	소급지원	비고
2024. 11. 10.	2025. 1월 말	150,000원(11,12월분)	
2025. 2. 10.	2025. 3월 말	125,000원(2,3월분)	

(예시) 2024. 11월 중위소득 63% 이하로 자격변동시, 소급지원 없이
2025년 1월에 상반기 지급분만 지급

- ▶ 주소를 변경한 경우

- 전입일이 급여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는 신 거주지, 이전인 경우에는 구 거주지에서 지급(타 시·도에서 전입 시 신규기준 적용)

[2] 지원방법

- 지원여부 검토 시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참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2026년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 지원금액	295,200	407,500	532,700	701,300

-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관련 사업이 있을 경우, 반드시 사업 부서를 통한 신청자 지원 여부 파악 후 지원 결정
- ※ 시군 에너지 사업 수급 대상자 난방연료비 중복 지원 시,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참 고 사 항

• 에너지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

(지원내용)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가능한 바우처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지급 받은 자 제외

(지원금액) 연 최대 71만원 지원('24년 기준)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 등유바우처(산업통상자원부)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지원내용) 난방용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연탄쿠폰 지급 받은 자 제외

(지원금액) 세대당 31만원

(신청방법)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신청,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 온라인 신청(복지로)

3 건강관리비 지원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세대당 연 20만원 이내
 -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일반 의약품 구입 비용 등 의료비 지원
 - 당해연도에 제출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처방전 등으로 진료내역 및 영수증 등으로 의료비 지출금액 확인 후 세대당 20만원 이내 지급
 - 단, 일반 보약 및 소화제, 건강보조제, 파스, 종합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지원불가하며, 보약의 경우는 병약으로 분류되는 경우(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확인)는 지원가능함

(2) 지원방법

- 당해연도 진료, 치료, 의약품 구입 등에 한하여 지급 결정
-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관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 안내

참 고 사 항

- 의료급여(보건복지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지원내용) 외래진료, 입원비 약제비 등 지원

(지원금액)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필수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주소지 및 실제 거주 지역 관할 시·군·구(읍면동)방문신청

4 방과후 자녀학습비 지원

(1) 지원사항

○ 지원대상

- 기준중위 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세대의 중·고등학생 자녀
- 방과 후 학원 등에서 희망하는 과목의 보충학습, 특기교육 등을 받을 기회가 없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급

○ 지원내용 : 1인당 연 60만원 이내(월 5만원)

- 외국어, 컴퓨터, 예체능, 학습지, 방과후 학원,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 학습비

※ 어려운 가정 형편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영수증 등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이후 영수증 제출 시 3개월 이내(직전 분기)까지 소급지원 가능

○ 중복제외 : 해당없음

○ 관련서류 :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2)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거주지 주민센터 접수 후 3개월분 수강증, 수강료 납부 영수증 등을 매분기 말 제출받아 수강여부 확인 후 학습비 입금 (월 지원금액 한도 내 지급)

- 신규채정자는 급여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학습비 전액 지급하며, 중도 탈락자는 해당 월까지 지급(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 수급으로 결정된 달의 급여 전액 중지)

- 온라인 강의 수강의 경우, 수강 내역과 로그인 유무 필수 제출

IV. 기타사항

- 시장·군수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실적 및 부정수급 결과보고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함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여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기타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등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도지사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기본 목적 및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안내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신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자격을 갖춘 자가 보호대상에서 누락 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 및 사업내용 홍보 철저, 신청인에게 지원절차 등에 관해 충분히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조사서 등 민원서류는 반드시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업무 처리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기준 중위소득, 변동사항 등 확인 철저(※ 특히 전출입 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 가능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자립금 사업계획서						
창업형태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사업명						
신청사유 및 사업내용	○ 신청사유 - ○ 사업내용 - -					
창업종류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업 <input type="checkbox"/> 기존사업 <input type="checkbox"/> 업종변경 <input type="checkbox"/> 기 타					
사업장 형태	사업장 소유	<input type="checkbox"/> 있음 (m ²)				
		주 소				
	사업장 임대	<input type="checkbox"/> 전 세 (원) <input type="checkbox"/> 월 세 (원) <input type="checkbox"/> 기 타 (원) <input type="checkbox"/> 보증금 (원)				
		주 소				
신청업종	<input type="checkbox"/> 상 업 <input type="checkbox"/> 서비스업 <input type="checkbox"/> 제조업 <input type="checkbox"/> 농 업 <input type="checkbox"/> 축산업 <input type="checkbox"/> 어 업 <input type="checkbox"/> 임 업 <input type="checkbox"/> 광공업 <input type="checkbox"/> 건설업 <input type="checkbox"/> 가가업 <input type="checkbox"/> 기 타					
업종 관련 경험 및 경력	현 재 종사직종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가장 오랜기간 종사한 직종	<input type="checkbox"/> 자영업() <input type="checkbox"/>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기 타()	
		경 력(년)			경 력(년)	
	관련 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류		
창업자금 및 사업정착금 용도	○ -					
사업일정(계획)	일 정	계 획 (자금사용내역 등)				
	00월 00월					
사업자금 운 용	총 사업 소요자금			예상소요 경비내역	예 상 매출액	-월 매출액 () -년 매출액 ()
	신 청 금 액					
	신 청 외 금 액	(자기자본)	원			
		(대출)	원			
부족자금 확 보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미확보					

[서식 4 호]

담당자	담 당	읍면동장/00과장

사실조사복명서(생활자립금)				
1. 조사일시				
2. 조사대상자				
3. 조사장소 (출장지 or 확인처)				
4. 조사목적				
5. 조사내용				
6. 조사결과				
7. 조사자	소속/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복지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급여신청결과 <input type="checkbox"/> 급여변경·중지] 통보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현보장내용	보장구분	급여내용		
조사 심 의 결 과	<input type="checkbox"/> 급여신청자				
	<input type="checkbox"/> 보장(급여) 적 합	보장구분	급여내용		
		보장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특이사항	<input type="checkbox"/> 가구원 일부보장()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수급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보장안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같이 급여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지정된 급여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셔야 하며, 보장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급여대상자 선정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보장(급여) 부 적 합	부적합사유			
		보장부적합 안 내	귀하가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 조사·심의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보장(급여)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의 변동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급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 시는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현 급여대상자				
	<input type="checkbox"/> 급여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input type="checkbox"/> 급여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사후관리 내용과 관련서류 제출 의무 명시 등			
<p><input type="checkbox"/> 복지대상자 급여신청(변경)/급여중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등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담당자: 직급 성명 문의 전화번호: 시장·군수·구청장 (인)</p>					

[서식 8호]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p>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p>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2.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생활자립금

Q. 생활자립금의 경우 업무처리 방법은?

A. ① 신청서 제출 및 사전 상담

- 읍면동 담당자 : 초기상담지 작성 및 적정여부 1차 확인

②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제출(서식 1,2)

- 증빙서류

· 사업자 등록증(신청자 이름 맞는지 여부, 개업 3개월 이내 여부 확인)

· 임대차 매매계약서(실제 임대차 거래 여부),

· 관련 영수증(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

· 창업현장 사진, 통장사본

· 기타 사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첨부

③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후 조사서 작성(서식3)

- 반드시 현장확인 후 현장사진 첨부

④ 지원여부 검토 및 결정, 지원금 지급, 결정내역 통보(서식 8)

Q. 창업이 아니라 기존시설을 인수할 경우 증빙자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사업자등록증 변경, 권리금·매매대금등 관련 이체자료 등 인수관련 증빙 자료 및 사업계획서, 현장확인사진 등 확인 후 지급

□ 난방연료비

Q. 한부모 홍길동씨는 '24년 1월 10일에 한부모가족 신청을 하여 '24년 3월 20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결정이 완료되었음. 하지만 '24년 1월 25일 이미 난방연료비가 지급 되었다면 홍길동씨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는 상반기 1회(1월말), 하반기 1회(10월말)이지만 신규책정 등으로 추가지급 필요시 지급 가능함으로 3월 중 소급지원 가능

□ 건강관리비

- Q.** 한부모가족 세대가 소화제, 건강보조제 등으로 의약품 구입 후 지급 요청 시 지급한지 여부?
- A.** 건강관리비의 경우, 일반 보약 및 소화제, 건강보조제, 파스, 종합 감기약 등 간단한 의약품은 지원불가하며, 보약의 경우 병약으로 분류되는 경우(진단서나 소견서 등으로 확인)는 지원가능

□ 방과후 자녀학습비

- Q.** 한부모가족 세대 중 축구부인 운동 특기생인 경우, 방과후 자녀학습비로 헬스장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 A.** 운동특기생 등 관련사항이 여부를 해당 학교 운동부 확인서 등 관련 자료로 확인하고, 실제 운동특기생이 맞는 경우 지원 가능
- Q.** 온라인 강의 등 선결제로 한번에 지급 가능한가?
- A.** 지급불가, 분기별 신청으로 매분기 수강여부 확인 후 지급 가능